

## 산업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 
산업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

2024년 6월 5일

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산업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

2. 위치 및 면적

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57-9

나. 시행면적 : 17,052.00㎡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명 칭 : 고척동 산업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

나. 주사무소 :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47다길 43, 지하1층

다. 대표자 성명 : 오명탁

라. 대표자 주소 :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47다길 43, 지하1층

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청산시까지

5.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24. 06. 05.

6. 건축개요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
| 사업면적  | 17,052.00㎡ (정비기반시설 2,005.00㎡, 획지 15,047.00㎡) |       |            |
| 건축면적  | 4,567.95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 면 적 | 58,140.11㎡ |
| 건 폐 율 | 30.36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용 적 률 | 212.61%    |
| 규 모   | 7개동, 367세대, 지하3/지상13층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|
| 용 도   | 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·복리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|

7. 주택건설규모 : 공동주택(아파트) 7개동 367세대 및 부대·복리시설

8.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귀속 내용

가. 공원(소공원) : 852.00㎡

나. 도로 : 1,153.00㎡

다. 토지귀속 내용 : 공원(소공원), 도로 설치 후 구로구에 귀속

9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| 주택형별   | 세대수   | 주택형별   | 세대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|
| 전용면적 60㎡ 미만             | 53 형   | 38    | 59 E형  | 13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59 A형  | 122   | 59 F형  | 37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59 B형  | 13    | T59 A형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59 C형  | 39    | T59 B형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59 D형  | 37    | 소 계    | 60  |
| 전용면적<br>60㎡ 이상 ~ 85㎡ 미만 | 74 형   | 11    | 84 B형  | 8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84 A형  | 38    | 소 계    | 57  |
| 전용면적 85㎡ 이상             | T123 형 | 1     | 소 계    | 1   |
| 계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367세대 |        |     |

10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7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의 인·허가 등 의제처리사항

가. 「주택법」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

나. 「건축법」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

다. 「하수도법」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

라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

마. 기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의제 처리 됨.